

◆ 문화칼럼 ◆

한류 재점화와 매니지먼트 시스템

몇년 전 이영애가 오사카에서 인터뷰할 때의 일이다.

피로할 때 무엇을 먹느냐는 질문에 오미자차를 마신다고 했다.

이튿날부터 오사카 시내는 물론 인근지방까지 오미자차는 붐이 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한국의 오미자차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인기 드라마 주인공에 대한 관심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그 인터뷰 순간에 이영애가 피로할 때 그냥 보통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듯이 '커피를 마신다'고 했으면 어찌되었을까?

사실 이영애는 피로할 때 커피를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미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이미지는 대장금의 이미지와 잘 겹쳐져 오미자 판매에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세밀하게 기획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면, 스타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스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스타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스타 뒤에서 스타를 만드는 또 다른 '관리자'들의 역할은 그래서 문화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런 특성이 사실 문화산업이 다른 산업과 다른 특성이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은,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스타가 될 잠재성을 파악하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잠재성을 본다든 것은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타시스템이다. 스타들도 처음에는 큰 차이가 아닌 작은 차이에서 시작한다.

끼 있고 예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 작은 차이를 모든 사람들이 우려러려 만드는 큰 차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다.

밤에 별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 빛에 반사되기 때문이지만, 대중들은 그냥 스타 자체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유명한 화가 뒤에는 화상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대중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박지성과 이청용 같은 스포츠 스타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스타는 아니었다.

그들의 잠재성을 포착하고 꽃피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지금의 박지성과 이청용이 만들어진 것이다.

스포츠스타들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유럽 구단들의 전쟁은 그래서 장막의 뒤에서 스포츠선수 영입만큼이나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화산업의 중개자(intermediary)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유승호 교수
강원대 영성문화학과

문화산업을 다른 산업과 똑같이 보고, 중간 거래비용을 줄이려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산업의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농수산물이나 제조품이 중간유통상인들의 가격조작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리니 중간유통비용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가 문화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람 키우는 일을 물건 만드는 일이나 농산물 키우는 일과 똑같이 보는 것이다.

물건이야 만들다 잘못되면 폐기처분하고 불량처리하면 되지만,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또 물건은 잘 만들어놓으면 그 견고성이 오래가지만, 사람은 아무리 잘 키워 줬다 해도 바로 앞의 미래를 알기 어렵다.

미술품 시장에서의 큐레이터, 스포츠 시장에서의 스카우터와 매니저, 음반 연에 시장의 매니지먼트사들이 모두 이러한 사람 키우는 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게도 당연히 많은 보상이 돌아가야 창조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요즘 연예계에서 아이돌스타들 계약이 문제라고 한다. 한류의 선봉장 스타들이 어린 나이에 장기간 계약을 하고 자신들의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스타는 만들어지고 또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없는 것이 문화산업적 논리이다.

아담스미스도 '국부론'에서 말했지만, 인가인은 사생활이 없는 대가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인가인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인 부당대우나 과도한 노동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헌법과 법률이 엄연히 존재한다.

아이돌스타들과 매니지먼트사와의 갈등으로 매니지먼트 기능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스크린에 비춰진 스타들만 고상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한류가 여기까지 온 것은 스타들을 활용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한몫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화산업은 사실 물건을 다루는 제조업보다는 사람을 다루는 의료산업에 더 가깝다.

의사는 자기분야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쌓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꼼꼼한 처방을 한다. 한번 실수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 한류의 아시아부로의 재점화를 위한 이 시점은, 스타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능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시스템'에 대한 꼼꼼한 고민과 처방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분명하다.



◆ 교육법률산책 ◆

입학사정관제 하의 학생선발 공정성, 객관성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천재민 변호사

E-mail : lawdeo@barunlaw.com

학력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경력
1996 제3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 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행정소송 담당)
1999-2000 인터넷무료법률상담홈페이지 '천재민의 법률세상' 운영
200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
2002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02-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지 않고 곧바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국립립 대학이라면, 학생은 그 학교의 장을 상대로 하여 입학 불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이 입학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그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당해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입학지원서 제출과 대학의 지원서 수령을 법률상의 '계약관계'로 보아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데다, 사립대학이 자신이 마련한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한 입학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넘어 입학허가를 강제하는 것이 그 법적 성질상 가능한지에도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입학불허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학생의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 법원이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그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 데에다, 무엇보다도 소송 과정에 1-2년의 세월이 쉽게 지나갈 것이므로 승소하였다고 한들 학생으로서 대학에 입학할 시기를 놓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라 대입전형이 진행됐으나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까?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생이 지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준, 당해 학생에 대한 평가내역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의 판단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고, 대학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학이 학생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거나 이의제기가 수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 학생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입전형이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할까?

대입 자율화조치의 하나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는 2007년 10개 대학의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다수의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입학전형개혁은, 종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수립하였으나, 200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기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되었고, 이로써 입학사정관제도는 확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여 학생의 성적, 개인환경, 잠재력 및 소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학사정관은 대입관련 전형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 여부는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그 관건이 달려 있다. 따라서 아직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각 고등학교 간의 학력차이와 특성의 편차가 상당하여 학생부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학부모·학생·학교가 대학입시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위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임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반독점법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국내최초" 해설서
중국기업 인수, 합병 및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필독서"

- 주요내용 ○
 - 중국 반독점법 및 M&A 실무 가이드
 - 중국투자 또는 합병/재정합병의 문제사항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 중국 반독점법 특강시리즈 - "과거를 넘어 M&A 급진시점" 등 해설

글로벌기업의 중국시장진출 필독서

중국 반독점법

김도현



박사 김도현(양원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법학사 석사학위 취득(1997)
미국 워싱턴대학(LL.M) 졸업(2008)
미국 워싱턴대학 행정학 석사(2007)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反 壟 斷 法
김도현 변호사가 국내 최초로 펴낸 중국 반독점법
중국한 공정거래법과 해설서로서
21세기 글로벌기업 M&A를 포괄한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진출 필독서!

법문사 : TEL 031) 955-9500

法 文 社